

# 연구장비심의위원회규정

개정 2018.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연구개발예산”이란 정부에서 새로운 지식축적이나 창조적인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2. “장비”란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하며,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연구시설”이란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말한다.
4.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5. “연구기관지원사업”이란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장비)**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및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ZEUS)에 보유장비로 등록된 장비에 적용한다. 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2.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상정
3.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4.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
5.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
6.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
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임명직 위원을 합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산학협력단장, 산학기획센터장, 연구지원센터장, 창업보육 센터장, 사무처장, 교무처장

2. 임명직 위원 :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이상 4인 이내

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당연직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실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장비심의)** ① 연구기관지원사업에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 도입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장비책임자가 장비활용범위를 판정받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 활용목적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비책임자가 장비상태를 판정받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상태 판정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장비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장비 도입요구서

도입장비명	한글	일반화된 장비명을 사용	
	영문	일반화된 장비명을 사용	
수량/단위		도입가격(예상)	장비가격(VAT포함)외 제반비용을 포함
<b>1. 기본정보</b>  <b>1) 장비용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입하려는 장비를 이용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자세히 기술</li><li>○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할 것.</li></ul> <b>2) 주요사양(규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비의 사양(규격)을 기재</li><li>○ 내용이 많을 경우 규격서 별첨</li></ul> <b>3) 취득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체개발, 국내외 구매구분 및 취득방법 기술</li></ul> <b>4) 국내외 기기 보유현황(중복성 검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a href="http://www.zeus.go.kr">http://www.zeus.go.kr</a>)에서 중복기자재 검토</li></ul>			

## 2. 운영정보

### 1) 운영기반 조성 여부

- 장비운영기반(설치장소,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2) 운영비 확보 방안

- 장비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3) 운영시 전문성

- 운영부서의 장비분야 전문성에 대한 기술

### 4) 운영부서 실적

- 운영부서의 장비 운영실적 및 능력 기술

### 5) 운영전문가 확보 여부

- 운영 전문가의 확보 여부 및 전문가에 대한 기술

### 3. 타당성

#### 1) 사업 분야 타당성(도입 필요성)

- 사업(연구)분야에 대한 구매 장비의 예상과급효과 기술 또는 신청하는 장비와 관련된 수행 과제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2) 수요 및 과급효과

- 구축장비의 수요 및 구축시 예상과급효과 기술

#### 3) 유사동종장비 차별성

- 유사 동종 장비와의 차별성 기술
- 구축하려는 장비가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장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이유

### 4. 노후 대체 장비의 경우

#### 1) 시기적 적절성

- 대체시기의 적절성 기술

#### 2) 대체예정 노후장비의 활용실적 기술

- 대체예정 노후장비의 활용실적 기술

위와 같이 장비도입을 요구합니다.

20 . . . .

장비도입요구자 : (서명)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연구장비 활용목적 심의 요구서

<b>자산관리번호</b> (소속기관에서 부여한 고정자산관리번호)	※ 미등록 자산의 경우 미기재		
<b>장비명</b> (국문/영문 명칭 기재)		<b>모델명</b> (개발인 경우 개발 장비로 기재)	
<b>구입(취득)금액</b> (단위 : 백만 원)		<b>취득일자</b> (YYYY-MM-DD)	
<b>수량</b>		<b>내용연수</b> (OO년)	
<b>활용목적</b>	○(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 사용자가 장비활용에 대해 선정한 이유에 대해 작성		

위와 같이 장비활용목적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

장비책임자 : (서명)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연구장비 상태 판정 심의 요구서

<b>자산관리번호</b> (소속기관에서 부여한 자산관리번호)	※ 미등록 자산의 경우 미기재			<b>NTIS 장비등록번호</b>		
<b>장비명</b> (국문/영문 명칭 기재)				<b>모델명(제조사)</b> (개발인 경우 개발 장비로 기재)		
<b>취득금액</b> (단위 : 백만 원)				<b>취득일자</b> (YYYY-MM-DD)		
<b>관리책임자</b>				<b>내용연수</b> (OO년)		
<b>자체 평가내역</b>	※ 장비상태 조사결과 작성					
<b>자체장비 판정</b> (해당란에 '○'표시)	<b>유휴장비</b>		<b>저활용 장비</b>		<b>불용장비</b>	

위와 같이 장비상태판정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

장비책임자 : (서명)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